

제59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9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8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13:00 ~ 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한국아동보호학회 ·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무궁화복지월드

후원 : 화광신문 · 한국로슈진단 · 광동제약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보호학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일정

13:00 - 13:30	등 록
제1부 개회식 사회 : 김 지 현 교수 (경북대학교)	
13:30 - 13:50	개회사 : 문 영 희 회장 (한국아동보호학회) 인사말 : 이 배 근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격려사 : 시 경 술 이사장 (무궁화복지월드) 축 사 : 정 춘 숙 국회의원 축 사 : 이 명 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3:50 - 14:00	휴 식
제2부 발표 및 토론 좌장 : 강 동 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제발표 I 14:00 - 14:50	주 제 :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 학교에서 만난 가슴이 멎은 아이들 - 발표자 : 김 진 희 (Wee 클래스 상담사) 토론자 : 임 예 윤 (송실대학교 강사)
14:50 - 15:00	휴 식
주제발표 II 15:00 - 15:50	주 제 :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 발표자 : 양 정 옥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남양주 가족상담센터장) 토론자 : 조 좌 영 (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사)
15:50 - 16:00	휴 식
제3부 발표와 토론 좌장 : 강 동 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제발표 III 16:00 - 16:50	주 제 :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방안 발표자 : 차 풍 회 (법무부 청주소년원 계장, 사회복지사, 범죄심리사) 토론자 : 이 재 영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6:50 - 17:30	종합토론 및 폐회사

목 차

제 1 주제

[발표문]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 학교에서 만난 가슴이 멎은 아이들 - ……	1
[토론문] ……………	9

제 2 주제

[발표문]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 ……	15
[토론문] ……………	35

제 3 주제

[발표문]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선도방안 ……………	39
[토론문] ……………	59

제 1 주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 학교에서 만난 가슴이 멍든 아이들 -

김진희 (Wee 클래스 상담사)

임예윤 (송실대학교 강사)

주제 I 발표문

아동학대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의 관련성
- 가슴이 멎은 아이들 -

김진희¹⁾



1) Wee 클래스 강사



가슴이 멎는 아이들



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멎는 아이들

지금 - 여기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험든 아이들

사 례1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험든 아이들

인간의 욕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찡찡 아이들

* 유엔아동권리 협약 4대 기본원칙

-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
-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의 권리
- 발달의 권리
- 보호의 권리
- 참여의 권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찡찡 아이들

사 례2

'나는 공부를 잘 해서 그 아이들을 이길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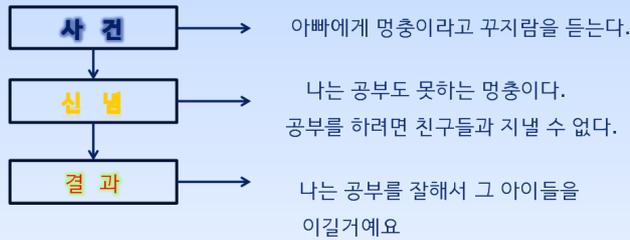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험든 아이들

사례 2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나는 나다 - 배지니안 사티어

세상 어느 곳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겠으나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다.

나로 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나 혼자서 선택한 것이므로 진정 나의 것이다.
나는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내 몸과 내 몸이 하는 모든 것
노여움이나 기쁨, 좌절, 사랑, 실망, 흥분,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내입과
거기서 나오는 공손하거나 달콤하거나
거칠거나 울거나 틀린 모든 말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모든 행동들
나는 나의 꿈과 희망과 공포심을 소유한다.

나는 나의 모든 업적과 성공
실패와 잘못을 소유한다.

내가 나 자신을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한
나는 용감하고 희망차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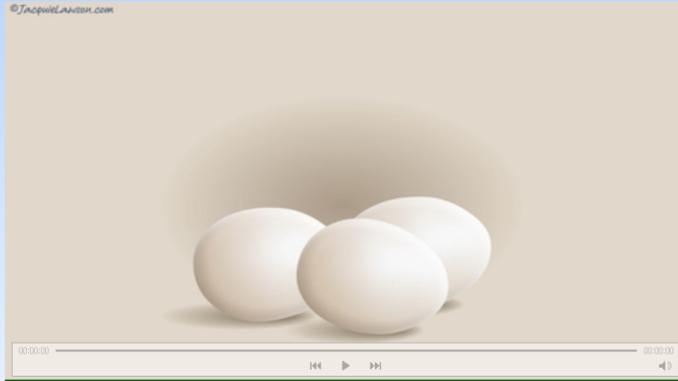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들리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또 주어진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그 모든 것은 나다
나는 나의 주인이며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나이며 나는 괜찮다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멍든 아이들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프란시스코 페레 -



가슴이 멍든 아이들



다양한 아동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안에 햇불을 켜 주세요!





‘피해자’라는 틀에 갇힌 아동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

임예윤²⁾

가정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폭력적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외부환경에서 경험하는 부당함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피해자로 살아간다.

사례1의 아동은 엄마로부터 잦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는 비교적 소원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관심을 얻고자 과한 행동을 보이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아동의 행동은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닌 관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느껴진다. 사례2의 아동은 아버지로부터 ‘너만 잘하면 돼’, ‘너는 잘 하는 게 뭐가 있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나는 멍충이니까’ 라며 자신을 아버지가 규정한 틀 안에 가두었다. 또한, ‘공부가 싫은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갔고, 그것은 또래 관계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더 까칠하게 구는 행동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례의 아동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사를 만났지만, 공통된 경험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이다. 약하고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잃은 채 자신의 인생을 침해받으며 피해자로 살아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피해 아동은 대개 한 번이 아닌 여러차례 피해에 노출된다. 이미 자신이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에 무뎌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발표자의 사례를 보며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이 연속선상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진다.

이러한 피해아동에게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며, 그 체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경험으로 큰 배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토론자는 위 두 개의 사례에서 아동의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1. 문제 중심 상담보다 아동 중심의 상담의 확대

피해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충분히 조사하여 아동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아동 중심의 상담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 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아동중심, 즉 인간중심의 상담과정으로써 아동의 욕구와 강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회복을 이끌어내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사정에 초점을 두고 수면위로 드러난 문제,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를 하고 종결하는 상담

2) 송실대학교 강사

에서 나아가 좀 더 심층적으로 아동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이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2.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변화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전문가는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에 비해 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많은 학생을 상담하면서 그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학교 내 다른 인력과 달리 자신의 전문적 역량에 확신하지 못하고(최상근, 2011), 역할수행에 있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심층적인 개입이 어렵도록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는 학생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면서 겪는 소진을 예방하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재정 확보를 통해 학교 내 인력 증원과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기대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가족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많은 연구에서 가정환경과 가해학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정 내 아동방임, 별과 욕 등 폭력경험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정화, 2016).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 교사는 피해아동의 가정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교사는 피해아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피해학생도 가해학생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호감을 느끼지 않기도 하였다(방기연, 2011).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우리애가 잘못했으려니 하고 그러니까 잘하라고 때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부모의 학대행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사례1), '이 멍충아... 공부만 잘하면 다 애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고..' 등의 발언과 강압적인 태도(사례2)는 아동 스스로 '멍청이 같고 외롭고 슬프다'는 감정을 들게 하며 계속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남아있게 만들었다. 성장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피해 아동의 자의식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로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가두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아동이 대처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가족건강성³⁾은 매우 중요한

3) 가족건강성: 가족이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역할을 한다. 가족 간 응집력이나 표현력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피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가족 내 갈등이 많은 가정의 아동은 피해상황을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처해나간다(장윤옥, 2013). 아동의 행동은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자신만의 생활양식이 있으며, 그 방식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분리할 수 없는 환경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과 함께 가족 개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상담실에서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개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개입을 위해 학교는 전문적인 상담기관, 가족치료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상담교사는 피해아동 상담의 비밀보장에서도 예외판단을 통해 가정이나 상급기관으로 아동의 상황을 알려 더 나은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족개입을 통해 가족 내 역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를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내담자 중심 상담과 맥을 같이 한다. 피해아동 즉, 내담자를 둘러싼 환경에 심도있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가정환경이 변화하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폭력’이라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모의 생활양식에 자녀를 가두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며, 아동을 개별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과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본 토론자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개입의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한다. 다만, 어떤 현장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사정이 아닌 내담자의 목소리로 직접 내담자의 욕구를 듣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과 함께 윤리적 고려로 인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아동의 경험을 대변해줄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담실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구정화, 2016, “가정환경 요인이 초등학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9(1), pp.1-25.
- 방기연, 201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2(5), 1573-1778.
- 유영주, 2002, “건강가족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생활과학논집, 6(1), pp.1-24.
- 장윤옥,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1(1), pp. 231-260.
- 최상근,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보고서.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도, 외부 체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유영주, 2002). 가족원 간 유대관계 및 가치체계 공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으로 평가한다.

제 2 주제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

양 정 옥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남양주 가족상담센터장)

조 좌 영 (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사)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

양 정 옥⁴⁾

인간은 중요한 상대방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정서적 위안이나 물질적 도움은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인간의 성장 발달의 결정적 영향을 주는 주양육자인 부모의 역량은 인간의 인격과 자아형성의 기초를 세워주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 결속력이 이완되었고 전통가족에 비해 보호를 받아야 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신체적 및 정서적 방임과 학대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으로 체벌이 훈육과 혼동되어 가정과 교육적 상황에서 수용적인 경향을 보여 왔으며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정의와 범위가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영아살해, 아동유기, 유모에 의한 대리양육, 미성년자의 노동 등의 유형으로 고대사회로부터 수용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의료계를 중심으로 피학대하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최근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 성적학대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왔다.

아동학대의 원인에는 가해자인 부모의 성격적 결함,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성 및 아동학대의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적 문제,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세습적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와 더불어 학대를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예방대책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문화 관습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성공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우리나라가 시도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만의 1988년부터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중화아동기금을 중심으로 지역연결망이 구축되었고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의해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아동학대를 이해하는 모델은 지금까지 규정되어 온 부모의 일탈행동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가정적 제 요인들을 포함시킴으로서 부모-자녀 사이에 유발되는 일련의 스트레스를 정점에 두는 새로운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학대받는

4) 경기도 남양주 가족상담센터장

아동의 발견과 평가에는 정신 병리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사회 심리적 접근 등이 시도되고 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받는 아동의 평가기준으로서는 스트레스의 상태, 정신건강의 문제, 가정문제를 포함한 20개 항목이 교사, 의사, 간호원, 유치원 교사 등에 의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학대가정을 평가하는 일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함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고 신고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자본을 중심으로 거대도시화, 정보화, 산업화 된 현대사회는 가정과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특히 아동학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부부관계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녀의 잘못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체벌이나 꾸중이 아동학대의 한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관행이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의 거부에서 출발하게 되어 학교 부적응과 실패에 연관된다. 학대피해 아동 청소년의 자아 위축은 자아정체성과 역할 혼미, 도덕성발달과 행동저하, 인성발달 및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드러나게 되어 학교 또래문화에서의 위축감, 따돌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연관되는 경향이 있어 가족의 리더십과 부모역량 교육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현실, 중재프로그램의 실태, 폭력피해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예방대책, 가족리더십과 부모역량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개념

1)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고용주)를 의미한다.

2)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와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인),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를 의미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

2. 아동학대의 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 의한 원인

심리역동이론은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나 부적절한 임신과 출산환경으로 인한 심리문제가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모는 아동에게 자신의 상처를 표출하여 욕구불만과 좌절을 해소하려고 하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관심과 돌봄을 원하는 아동에게 학대로 화풀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부모라고 해서 다 자녀를 학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학습이론에 의한 원인

학습이론은 가해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기술이 결여된 부모, 아동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부모, 어린 시절 체벌을 포함한 학대 경험이 있어 자녀에게 되 물림하려는 고집을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모에게 적절한 아동양육법을 학습할 기회를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3) 환경이론에 의한 원인

환경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빈곤문제, 무학, 직업적 스트레스 등이 학대를 유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해도 학대하지 않는 가정도 많으며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으므로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

3. 아동학대의 실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다.

2017년 전체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비율은 65.5%(2만2367건)로, 이는 2015년 60.9%, 2016년 63%보다 한층 높아진 수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 1000명 당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발견율 역시 2017년 들어 2.64%로 증가

하여 작년 대비 0.49%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9.1%) 또는 호주(9%) 등 주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발견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학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모 1만7177건(76.8%)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초·중·고 교직원,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 3343건(14.9%)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 교직원(1345건, 6.0%), 보육교사(840건, 3.8%), 아동복지시설(285건, 1.3%) 순으로 보도되었다.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보호한 건수는 1만8104건(80.9%)이고, 시설, 친인척 등에 분리하여 보호한 건수는 4179건(18.7%)이다.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 30만8712건, 심리치료 6만621건, 가족기능 강화 2만9398건으로 총 50만 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32.6%(7297건) 가량을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하였고, 나머지 62.9%(1만40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속 관찰 중이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아동학대는 시대나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덴버의 소아과 의사 C. Henry Kempe 와 그의 동료들의 저서『The Battered Child Syndrome(1962)』이후 확산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유형도 방임, 신체적 학대, 성학대 등으로 확장되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1장 제3조의 7).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아동을 체벌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어왔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학대 사망 사건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체적 학대 경험은 친숙한 사람들과의 접촉 회피 뿐 아니라 또래와의 친사회적 만남에 공격적 반응을 보이게 만든다.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은 부모에 대한 의심이 많고 가정과 부모에 대해 과장하며 부모의 요구를 두려워하고, 다른 성인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고 신체적 접촉을 피해 규율을 어기는 특성을 보인다. 성 학대 피해 아동은 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동문제, 성적 행동, 낮은 자아 존중감은 평범한 삶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성 학대는 손상된 물건 신드롬 자신의 신체가 (오염되어 여성으로서 매력을 상실했다 느끼게 되는 것), 죄의식, 두려움, 우울증,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부족, 억압된 분노, 적대감, 손상된 신뢰능력, 역할경계의 모호성 및 역할 혼동, 발달과업성취 실패가 수반된 가식적 성숙지배와 통제, 죄의식(성적행위, 폭로, 가족해체에 대한 책

임감), 어두움과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악몽 등의 후유증을 보인다.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하는 행위로 학대 피해아동은 발육부진, 심한 경우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발달상황에 있어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 잠재된 파생적 문제가 발견된다.

방임의 경우 피해아동은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악화, 가정불화 등 변화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한 이론에는 학습이론, 환경이론, 가족체계이론, 스트레스 이론 등이 있다.

학습이론은 가해부모들의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기술과 지식습득 실패에 의한 것이며 부모역할에 대한 불만, 사회적 기술 결여, 아동발달을 무시하고 아동의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여 훈육만 고집하는 태도가 학대 원인이다.

환경이론은 스트레스 강조, 환경적 스트레스 증가가 아동학대 유발요인이라 설명한다. 스트레스 증가는 좌절,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적 하층·노동자 계층에서 주로 발생시키며 이러한 신체적 훈육은 빈곤층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가족체계이론은 가족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아동학대 원인을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아동을 희생양으로 선택,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혹은 인지의 왜곡이 학대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부모가 외부환경으로부터 과중한 압박을 받을 때,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특징이 부모 역할에 스트레스 부과하여 부모 자녀 사이의 긍정적 관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에 대처하는 양육방법기술이 미숙할 때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학대 피해아동은 학대유형별로 상이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연령에 따라서도 후유증에 차이가 있는데 학대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기에 더 심각했으며 애착형성 방해, 도덕발달, 불안감,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연구

1)「저소득가정 영유아 어머니를 위한 ‘시소와 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황혜정(경기대학교, 대한가정학회지 제51권 1호, 2013)

가.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아동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불리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어 최적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기중재 프로그램이 주목받음. 1960년대 미국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 언어, 행동,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혜정, 2013)

- 1) 국내 조기중재형 정책 사례
 - (1) 2004년 경기도 위스타트 운동
 - (2) 서울 및 경기도 각 지자체로 확산
 - (3)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모델로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범 실시.
 - (4)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 수행중.
- 2) 민간이 주도하는 조기중재형 사업 사례
 - (1)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시소와 그네 영유아 통합사업’ 시작
 - (2) 세부내용: 총 12주재 아래 주제당 4주 배당, 총 48주의 활동.
1주차에 센터방문하여 부모교육
2주차에 중재교사 가정방문 부모와 유아에 교육활동 지도,
3주차 부모와 유아가 함께 센터에서 소집단 교육활동
4주차 중재교사 가정방문, 가정에서의 활동 수행여부 확인, 프로그램 진행
- 3) 교육중재가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들을 지적, 그중 하나가 중재는 (대상)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임.
- 4) 빈곤가정의 아동은 빈곤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라 환경적인 열악함이나 가족의 위험요인 때문에 발달 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변화하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미침.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부모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 영유아발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2) 「초등학교 학교폭력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 및 사회요인
공격성(충동성)	부모의 무관심	낮은 학업성취
우울 및 불안	잘못된 훈육	낮은 학습의욕
조기비행	어려운 가정형편	학교에 대한 부정적 유대
반사회적 성향	잘못된 양육태도	학습긴장
물질적 가치관	가정불화	비행친구 접촉
지배성	가족의 구조적 결손	학교 증도 탈락
동조성(모방성)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적 태도	폭력매체 접촉

[표 6] 학교폭력의 위험요인

나. 위험요인 가운데 개인요인들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경우가 있어 변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폭력매체 접촉은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 및 사회요인
긍정적 가치관	안정된 집안 분위기	친구지지
자아정체감	부모의 정서적 지지	교사의 정서적 지지
자기효능감	부모의 학습관여	긍정적 학습태도
공정성	부모의 적절한 감독	주변환경 시설
내적 통제소재		

[표 7] 학교폭력의 보호요인

- 1) 보호요인들은 취약한 환경조건에서도 위험의 원천에 작용, 부정적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보호요인들은 위험요인에 비하여 통제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폭력의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이 더 취약하다.
- 2) 같은 수준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이라 하더라도 보호요인을 확보하고 있는 아동은 완충효과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 3) 연구결과 학교폭력의 개입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피해자 중심이어야 함.
- 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성격을 띄어야 함.
- 5)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아동들을 학교폭력을 적극반대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잠재적 가해, 피해 아동의 출현을 막도록 함.

2.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교유관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혜미, 김유미(서울교육대학교, 아동교육 제24권 제4호, 2015)

어떤 상황에서도 거부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여 정서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거부반응의 개인차를 거부민감성으로 개념화함.

가. 거부민감성: 특정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거부를 빠르게 지각하며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에 대한 불안함으로 즉각적이고 자동적이며 강렬한 정서반응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사가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정서인식,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함.

나. 정서지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로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자기효능감, 대인예민성, 교우관계 및 정신건강, 학교적응 등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짐.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해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함.

잠재변수	관측변수
거부민감성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교우관계	친구유무,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정서지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표 8] 거부민감성

다. 구체적 거부정서 상황을 제시하여 정서인식과 표현, 조절 및 활용방법 훈련 가능, 열악한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 또래상담자와 같은 긍정적인 친구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 부모상담과 교육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학령기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이 남아와 여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준아, 김지현 공저(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3호, 2011).

가.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와 학습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남아는 여아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며, 여아는 남아보다 정서 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의 지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은 모든 문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짐.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표현이 가능한 능력 함양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아동의 문제 행동에 있어서 교사나 부모는 적절한 정서조절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지도해야 한다.

다. 남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만 사회적 지원이 설명력을 가짐. 문제행동 외현화에 있어서는 부모 지원, 수줍음-불안 문제에는 친구 지원, 학습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남아의 문제행동 감소에 도움.

4.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과 수용의 범주」권세경, 이은정(경동대학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6)

가.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2014년 통계 기준,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83%가 아동의 가정.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가정이어서 사회 표면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가정사의 일환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공적 개입을 저어함.

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 등의 점에서 사회구조, 경제적 문제, 양육관련 문화적 관점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학대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

-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혹은 가혹행위 및 아동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하여 적극적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 학문적으로는 더욱 넓은 범주로 개념 확장.
- 2) 현행 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법을 가짐. 아동복지법 규범적 해석에 그친데 불과하여 사회적 인식의 준거를 판단하는데 이르지 못함.
- 3)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당사국의 적극적 절차수립까지 요구함.
- 4)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형사법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크며 아동학대 범죄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바는 피해아동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임에도 피해아동의 보호보다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확대에 더 중점을 둔 형태로 입법. 가정폭력 등과 같이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피해자의 보호처분을 우선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규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체

계의 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념 인식의 발현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되도록 할 것.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체계화, 중복되지 않는 구성이 필요하고 법체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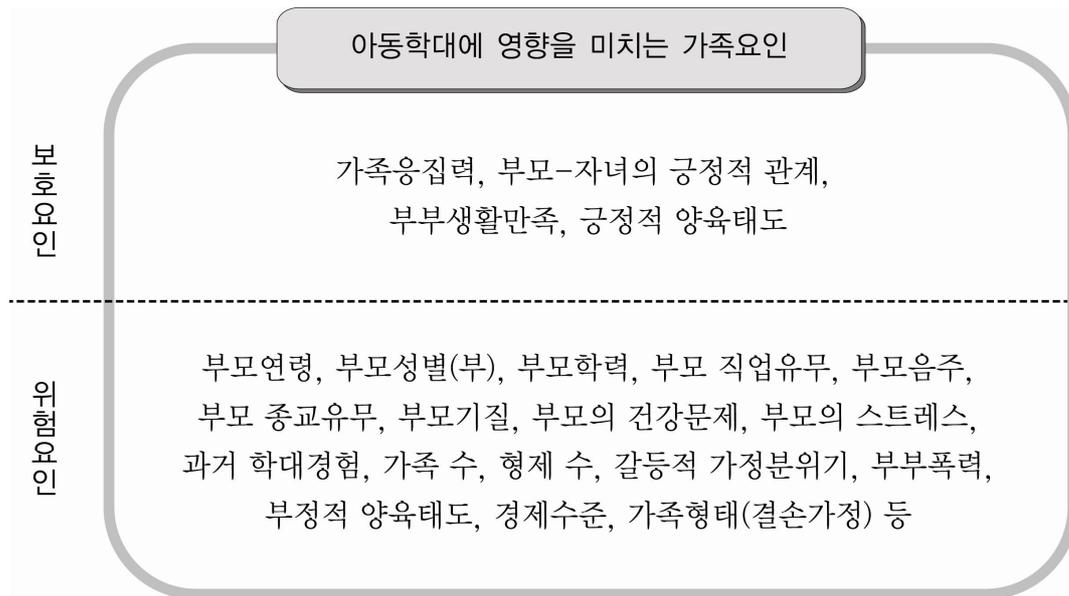
가족을 둘러싼 중층적인 사회 환경,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부모들이 가지는 인성 개념은 한 국가의 교육 문화와 가치를 반 하게 되며, 규범을 내 면화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이 작용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생태체계 요인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동은 가족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족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환경체계이며, 가족 내에서도 주 양육자인 부모와 관련된 변인은 자녀의 전 생애적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박영림·최혜림 2002)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송숙희, 1987)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오경자·이명희,2010), 아동과 부모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인 표상은 아동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는 틀이 되며 타인을 인식하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대인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가족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아동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맺고 있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부모와 아동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학대일 경우 쉽게 은폐 될 수 있고(윤난호, 1995), 부모는 아동을 소유물로 보아 양육에 있어서 훈육, 체벌 등의 학대행위를 합리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박행진, 1999)

따라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동은 가족영역에서 학대상황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라는 측면과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대부분이 가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주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다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중 각 요인은 상황 및 환경과 맥락에 따라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고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며, 학대유형에 따라 요인분류와 분석결과는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가정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종합·정리 한 후 요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에 대하여 41편의 연구물 중 총 49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중 보호요인 40개, 위험요인 452개로 분류하고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이질적인 결과에서 추출된 보호요인 40개는 크게 가족응집력,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 부부생활 만족, 긍정적 양육태도 4개의 변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림1」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아동학대 유발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은 권위적·과보호·적대적·통제적·비합리적·안일한 양육태도 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부모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한 요인 및 우울은 부모기질로 보았고, 경제적 부담감·경제스트레스·경제수준·경제력·빈곤에 관련된 요인은 경제수준으로 보았다. 갈등적 분위기·전제적 분위기·부부갈등·부부불화 등은 갈등적 가정 분위기로, 부부구타·부부싸움·가정폭력 등은 부부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부모연령, 부모성별, 부모학력, 부모 직업유무, 부모음주, 부모 종교유무, 부모의 건강문제, 부모의 스트레스, 과거 학대경험, 가족 수, 형제 수, 가족형태(결손가정) 등을 가족영역의 위험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학대유형 마다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별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상 큰 차이를 발견 할 수는 없었으며,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요인은 총 4가지의 변인밖에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유형별로 순위가 달랐을 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을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1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결과 학대와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각 연구결과에 드러난 학대 유형별 평균 효과크기를 분류·통합하여 학대유형별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2000년대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대관련 척도를 활용해 직접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학대유형 중에서도 특히 신체학대를 다룬 연구들이 많았으며, 가족영역의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가 위험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보호요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개입 시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이 많으며, 보호요인에 대한 개입은 등한시 되고 있다.

위험요인에 대한 요인 수와 효과크기가 보호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호요인도 일정 정도의 효과크기를 갖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요인에 대한 개입 확대와 동시에 이에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조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대상 연령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한 연구논문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그 지원체계의 수립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외부에서 쉽게 관측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나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기초조사 및 질적 연구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영역의 보호요인에서 특히 가족응집력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응집력은 가족기능의 한 요소로써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친밀감과 일체감,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Olson, Russell and Sprenkle, 1983). 이는 아동학대 유발가능성을 내포하는 가족 내·외부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동과 부모 사이의 원활하고 애정적인 소통이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다른 어떤 집단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이 가족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개개인의 생활이 우선시 되는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가족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역동을 통한 가족응집력 강화는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가족응집력은 다른 보호요인들과는 다르게 외부개입 혹은 외부자원을 투입하여 향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응집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개입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형성해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족 사랑의 날’처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 장치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응집력이 아동학대의 보호요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문제 발생 시 치료적 차원의 가족개입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족영역의 위험요인은 , 보호요인 보다 큰 관련성을 갖으며, 부모성별(부)이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유형 전 영역에서 아버지가 학대를 더 빈번하게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상하다는 전통적인 부모역할의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부모교육이 중요시 되어왔지만 부모교육을 받는 대상을 살펴보면 아동의 직접적인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버지가 올바른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에게는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김경민 . 정익중, 2009). 이러한 부모교육을 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할 때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학대유형별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호요인에서는 4개 변인 밖에 없어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에서 위험요인의 1순위가 부모성별(부)로 모두 동일했고, 일부 순위 역시 부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중복학대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 중복학대가 전체 사례 중 2,621건 (4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발달의 위험성이 높으며, 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행동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높고(Hazen, Connelly, Roesch, Hough and Landsverk,2009), 우울불안, 주의집중,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과 관련하여 적응상의 문제를 갖기 때문에(김세원 . 이봉주, 2010) 중복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요인의 개수도 매우 적었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학대유형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다른 학대들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다

를 수 없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학대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과거 학대경험은 정서학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과거 학대경험은 이전부터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Main and Hesse(1990), 고정자 .김갑숙(1992), 서은주 .박혜인(1994) 등이 보고했던 바와 같이 어릴 때 본인 부모의 폭력행동을 관찰하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학대대물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서학대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외적인 피해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아 학대가해자나 피해자가 학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훈육이라는 명목아래 일부 체벌이나 학대가 정당화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더불어 정서학대 우선순위 중 부모의 스트레스와 갈등적 가정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요인이 학대유발 상황을 조성하고, 과거의 학대경험이 상기되어 정서학대로 표출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학대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학대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대가해자의 부정적인 경험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 과정의 일부로 과거의 학대경험을 상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육태도에 관한 변인은 보호요인에서 미미한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위험요인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역시 적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하지만 양육태도는 우선순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의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양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육기술이나 양육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는 동일선상에 존재한다.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훈육을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아동이 잘못 받아들였을 때에는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교육과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양육과정은 아동과 부모사이에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부모교육만으로는 적절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올바른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에 관한 교육을, 아동에게는 부모님 이해하기 및 올바른 의사소통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부모의 스트레스와 갈등적 , 가정 분위기, 부부폭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대유형에서 부모의 스트레스와 갈등적 가정분위기가 5순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던 부모의 스트레스와 적은 효과크기를 보였던 갈등적 가정분위기 등은 감정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학대와 부부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십상이다. 더욱이 부모 스스로 감정조절의 기능이 쇠약하다면 아동학대는 물론 가정폭력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Appel and Holden, 1998). 따라서 감정적인 영역의 위험요인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감정조절의 기능강화 기술과 긍정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

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경제수준, 결손가정, 부모음주 등은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에서 이들 요인들의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변해갈수록 아동학대에 관련된 요인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망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 Stephanie Miller(2002)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애착이론과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을 통해 아동학대로 정의 될 수 있는 가능 원인들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Miller는 일반적으로 빈곤이나 실업, 편부모가정이 아동학대 원인으로 거론되기는 하나 아동학대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지지하였다.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아동 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의 것으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적으로 받쳐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 준비가 덜 된 부모가 많다는 현실적 한계도 크다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부모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고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 시스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교육 등 많은 예방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만능으로 팽배한 산업화된 시대에 핵가족화로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 결속력이 이완을 초래하였으며 전통가족에 비해 보호를 받아야 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무책임, 신체적 및 정서적 방임과 학대는 점차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으로 체벌이 훈육과 혼동으로 가정과 교육적 상황에서 수용적인 경향을 보여 왔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정의와 범위가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또 다른 학대로는 반복학대가 있다.

아동은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는 더 큰 위험성을 지닌다. 국내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처음 신고당시 나이가 25세 이하인 경우 반복학대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반복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았다.

연령으로는 4~11세의 아동에게서 반복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였고 첫 신고당시 보고된 학대빈도가 잦았던 경우에 반복학대 위험성이 높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연구(74)에서는 141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가해자는 미혼모(34.8%), 친모(22.7%), 동거녀 및 계모(9.9%), 친부(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연령은 20대가 34.0%, 30대가 3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동 살해의 원인은 미혼모나 미혼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살해(37.6%)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양육능력 부족(시끄럽게 울, 말 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 화나서, 25.5%), 산후우울증(7.1%), 생활고와 경제능력부족(5.7%) 순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와 , 관련이 있는 ‘고의적 아동사망률’은 각 국가의 경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임과 아동의 안전까지 포함한 경우의 아동사망률인 ‘우발적 아동사망률’은 사회적 특징보다는 경제적 특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피해아동 신고 및 발견,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본 결과 2014년 이후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 체계의 1차 방어선이다. 신고의무자를 둘러싼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신고의무자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전문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김형모, 2008; 이유진 등, 2011).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자 규정을 마련한 목적이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대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의 아동학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으로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많은 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지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영국처럼 지역별 아동보호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만하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아동 및 아동관련 직종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자녀가 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 자녀양육이 시작되는 시점(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할 때 혹은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교육을 실시, 전체 사회의 폭력’, ‘감수성 향상 및 음주문화 개선’, CCTV, CPTED 도입,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중요한 상대방들과 교감으로 정서적 위안과 물질적 도움을 받으며 상호작용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지원의 사회 심리적 안녕에 대한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원을 건강인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지원의 출처가주로 가족이라는 점으로 볼 때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온 마을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델링이 되고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외의 사람들로부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출처를 다양화하는 정책을 펼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대상의 주축보다는 주변사건으로만 처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충격적인 학대 및 방임 사례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사망사건과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 사건,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은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였고, 2014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후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을 발표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법제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강은영, 김희균)에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사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가 없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법 규정을 보면 종래 『아동복지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감응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점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실무에 들어가 보면 법제도의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눈에 띄고 있는데 피

해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 문제와 위탁양육과 입양, 학대행위자에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외상후 장애 등 보다 근본적인 상처를 가지고 가정에 복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별한 담보장치 없이 이들을 원가정에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처분되었다. 그 처분에 걸맞은 이유의 해명도 없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없이 가정에게 문제의 처리를 떠맡겨지는 황당한 상황이다.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많은 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지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영국처럼 지역별 아동보호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만한 일이며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5. 정책 대안

□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첫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과 지역사회 단위의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둘째, ‘아동 및 아동관련 직종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셋째, 자녀가 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 자녀양육이 시작되는 시점(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할 때 혹은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교육을 실시 넷째 전체 사회의 폭력’, ‘감수성 향상 및 음주문화 개선’, 다섯째, CCTV, CPTED 도입,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강화’가 필요하다.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1)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예방의료체계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의료체계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초기사정용 간이지표 개발 및 활용’

2) 조기개입 활성화를 위해 ‘위기개입과 사례관리와 사후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가족상담전문기관 적극 연계하여 MOU 체결, ‘잠재적 위험사례 관리 강화’ 필요

3)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 ‘조사단계의 전문성 강화’, ‘아동치료서비스의 강화’, ‘가족지원 강화 및 가족내 추가 학대 예방’,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 관리’, ‘통합적 사례관리 실시’, ‘아동학대 사망사례팀 구성과 통계집적’을 제안

□ 아동인권교육과 부모역량

아동에게 인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현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이유는 아동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비롯한다.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으로부터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의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이 아동의 연령에서 오는 미성숙함과 관계없이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최은혜, 2017). 권리의 주체자이면서 또한 보호의 대상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의 의견이나 선택이 자주 무시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가 허락되지 않거나, 성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되는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권리의 침해로 아동들은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상황들에 대해 성인들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아동권리의 침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관에서 교육받는 연령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 교육기관에서 더 어린 시기부터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건들(김지현, 2016; 손현경, 2017; 전양태, 2017; 조영호, 2016)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아동의 삶과 전인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배경은 가정환경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관계가 주 양육자인 부모이다. 부모의 역량이 아동의 인권에 있어 매우 소중한데 부모로부터 학대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역설적인 현실이다.

아동인권교육은 주 양육자인 부모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효과성이 입증되고 부모교육이 아동권리를 실현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실천역량은 더욱 중요하다.

부모의 웰빙만큼 아동의 웰빙도 중요하므로 부모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며(이은주, 정계숙, 2012),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아동학대 빈도는 낮아질 것이다.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영향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독립적인 활동이 아닌 사회학습의 결과로 삶의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은 또래

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Vygotsky는 아동들이 내적인 성숙에 의해 스스로 고차원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보았다. 내적 성숙이란 '나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이며 성찰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세상과 통합하게 되는데 부모관계와 또래관계에서 '권력'이 투입되면 갈등, 문제, 폭력사태를 맞게되어 평등성이 어긋나 평화가 깨지게 되어 관계의 단절로 정상적인 관계맺기의 어려움으로 내적성찰이 이뤄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관계 맺기를 시도하여 소통, 공감, 공유, 배려 등

안정감과 신뢰로운 토대에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부모역량교육이 필요하다.

온전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아동청소년을 미성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에 맞는 객체로서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는 기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부모역할이 요구된다. 그러한 부모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끊임없는 대화로 성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가족리더십과 부모역량

교육경제위기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심할수록 의견의 불일치가 잦을 것이며, 자녀갈등이 심해지고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가 깊을수록 가족적 자아가 부정적일 수 있다. 부모의 갈등상황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승화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아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가족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가족리더십의 발휘가 부모 자녀간에 매우 소중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한세영, 한아름, 2018),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추구에 있어 합리적인 가족리더십(이성적 상황판단, 전략적 예측, 논리적 문제해결, 최적화 수행관리)이 요구된다. 또한 온정성이 부족할 때 부모로부터 학대와 아동청소년 또래간 폭력이 유발되므로 갈등유발을 축소하기 위해 온정주의 리더십(포용적 겸손, 공감적 배려, 이타적 협력, 신뢰기반 임파워먼트)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체계와 자녀체계에서 각자 나름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리더십으로 분화된 역할과 연대감이 작용하여 개별적인 가족구성원인 인권이 보장될 때 그 가족구성원이 각각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때 자아정체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가족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대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문

조 좌 영⁵⁾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동학대’와 관련 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양정옥 남양주 가족상담센터장님의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과 정책대안’이란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토론자인 본인은 교육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만나서 교육 및 상담을 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후, 마음의 상처를 치료 받지 못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감정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 폭력의 되물림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어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추어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부모역량과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것은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 제목 중 ‘사회문화적’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사회문화적’이란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발표자님께서 가족상담 현장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많은 지도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또는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5) 경기남부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사

첫째,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부모역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발표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가정의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모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건화 되어 법적 근거로 의무 교육을 받는 부모 외에는 대다수 학대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아 가정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나 교육이 필요한 ‘아동학대를 한 부모’를 위한 구체적인 역량강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조기 발견하여도 조기 개입으로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즉시 개입 가능하지만 그 외 학대의 경우에는 사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이 적극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3 주제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선도방안

차 풍 회 (법무부 청소년원 계장, 사회복지사, 범죄심리사)
이 재 영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선도 방안

차 례*

<요 약>

최근 학교폭력과 아동폭력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학대피해경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대피해경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 현황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의 개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 Wee센터, 경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 등 지역사회 선도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찰의 선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현장, 사회복지현장 등에서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선도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아동학대, 학대피해경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선도방안

* 법무부 청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계장

I.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어느덧 약15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 ‘인천지역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집단 폭행을 견디다 못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추락 사망 사건’ 등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의붓아버지의 성적학대를 신고했다가 보복살해당한 12세 여중생 사건’, ‘아동학대 사건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원영이 사건)’,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 사건’, ‘월생 질식사 혐의 어린이집 교사 구속’ 등 아동학대 사건은 학교폭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면 곽형곤(2013)은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결과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김경호(2006)는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32쪽 결과는 피해자로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과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밝혀냈다. 박진희(2016)는 학교폭력이 개인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며,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비행친구 변수가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과 학교폭력 가해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변수는 학교 내 교우관계변수와 집합효율성 변수로 나타났다.⁷⁾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대피해경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곽형곤,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86-89.

7) 박진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85.

II.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

가. 아동학대

아동학대 개념은 나라나 학자의 주장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우리 나라 아동·청소년의 법적 구분은 법령에 의해 나이가 상이하다. 이 논문에서는 최원석(2018)이 주장한 ‘아동복지법에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며,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⁸⁾으로 정의한다.

나.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부모(79.8%), 대리양육자(12.2%), 친인척(4.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⁹⁾ 이러한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100건 중 약 80건이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학대 부모에 대해서 처벌 이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부모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학대피해경험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연구에서 ‘학대피해경험’의 개념은 ‘아동·청소년이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을 말한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는 ‘아동학대 피해증후군’, ‘피학대 여성증후군’, ‘비행표출’, ‘흉악범죄 표출’ 등이 나타난다.¹⁰⁾

8) 최원석,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실태 및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3권 제2호, 2018, 2.

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 2015년

10) 이동임, 피학대 경험이 있는 범죄자를 위한 치유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3권 제1호, 2017, 7-10.

2.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개념은 나라나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 학대피해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곽대경(2013)은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결과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에 공격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심은철, 1999; 도기봉, 2009).¹²⁾ 공격성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요인으로 소년원 학생과 일반학교 학생들의 공격성을 비교 연구한 지혜정(2013)의 연구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¹³⁾ 이처럼 공격성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부모의 배척, 신체적 체벌, 위협, 강압적 명령, 거부와 무관심, 방임, 부정적인 의사소통 등이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세리, 2007).¹⁴⁾

김경호(2006)는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결과 피해자로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과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밝혀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은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신체적 학대 정

11) 곽형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86-89.

12) 심은철,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 1999, 24-34.
도기봉(2009),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2, 83-103.

13) 지혜정, 남자청소년의 공격성과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반응 특성 연구 : 소년원과 일반 남학생들 중심으로. (2), 2013, 247-262.

14) 한세리,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도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애정이나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때린 것이라며 부모의 학대를 합리화했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다른 사람의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자신이 폭력을 유발했다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졌다. 셋째, 이들은 가해자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자신은 가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으며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첫째, 친밀한 관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폭력행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폭력을 용인하고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때렸다는 잘못된 인식의 연장선에서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의 잘못을 교정해 주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했다. 셋째, 자신의 폭력은 우발적인 것이며, 폭력의 정도도 결코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폭력을 최소화하면서 폭력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⁵⁾

박진희(2016)는 학교폭력이 개인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며,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비행친구 변수가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과 학교폭력 가해 지역사회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변수는 학교 내 교우관계변수와 집합효율성 변수로 나타났다.¹⁶⁾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대피해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선도 현황

우리나라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선도하는 기관은 지역마다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 서는 학교, 경찰,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유형은 크게 9가지이다. 교내 조치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교내봉사)가 있다. 교외 선도조치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선도조치는 출석정지, 전학, 퇴학이 있다. 부가형으로서의 조치는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이다.

가해학생 선도유형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봉사 조치치에

15) 김경호,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 청소년상담연구 Vol. 14. No. 1, 2006, 32.

16) 박진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85.

대해 알아보면, ‘사회봉사’는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봉사기관을 단위학교에서 일일이 찾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해당기관에서 가해학생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기가 어렵다.¹⁷⁾ 따라서 사회봉사제도가 더 일선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역교육청에서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

나. Wee 센터

교육부 소속 Wee 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5호 조치대상을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Wee 센터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Wee 센터의 운영자가 주로 전문상담교사이기 때문에 상담위주의 교육이 많고, 일반학생과 피해학생 상담을 같이 하고 있어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서는 비행유형별로 체계적인 집중교육이 필요하나,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¹⁸⁾

다. 경찰

경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사랑의 교실, 표준 선도프로그램 및 경찰서별 자체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1> 선도프로그램 종류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자체선도프로그램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역사회 전문기관(전문가) 및 경찰치안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경찰체험 및 선도프로그램
전문기관 연계	사랑의 교실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미술치료·법교육 등 선도프로그램
	표준선도 프로그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정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임상심리사가 진행하는 자기통제·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

* 자료 : 경찰청, 청소년 업무 통합 매뉴얼(2018: 52)

17) 이승현 등 4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AA-02. 2014, 111.-112.
 18) 이승현 등 4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AA-02. 2014, 111.-112.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경미초범 소년범에 대해 해당 소년의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서류에 수료증을 편철하여 송치나 사법처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입건 대상자 중에서는 선도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있다.¹⁹⁾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2-1>와 같다.

2016년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표 2-2>와 같이 외부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은 5,861명이 이수하였고, 경찰관서 내 자체 선도프로그램은 13,990명이 이수하였고, 표준선도 프로그램은 254명이 이수하였다.²⁰⁾

<표 2-2>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참여 인원	사랑의 교실		표준선도		자체선도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4년	29,654	96	5,661	42	627	237	23,366
2015년	21,789	118	5,985	45	463	228	15,341
2016년	20,105	126	5,861	52	254	235	13,990

*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2017: 145)

경찰 선도프로그램 연계의 전단계인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조건부 훈방, 즉결심판 회부, 입건 등의 결정을 하고 있으나, 소년범에 대한 경찰 훈방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되고 있으므로 그 다음 단계인 선도프로그램 연계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²¹⁾

학교전담경찰관(SPO) A경장 사례를 보면 상습적으로 반 친구를 폭행한 중학생 김바른(14·가명)군에게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참가를 권했다가 거절당했다. 상담과 심리분석 등 범죄에 빠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선도 방식인데도 의무가 아닌 까닭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경장은 "프로그램 효과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참가시키는 과정까지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경찰의 선도 조건부 훈방 조항을 신설하려 했지만, 검찰의 수사 종결권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며 "대상 청소년들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내지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²²⁾

라. 검찰

19) 박병무,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21

20) 경찰청, 경찰백서, 2017, 145.

21) 정재준·원혜옥,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 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39

22) 이유진, 경찰 선도프로그램 무용지물, 경인일보, 2018. 2. 27, 23.

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법사랑자원봉사위원(이하 법사랑위원으로 약칭)의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은 미완성인격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악에 쉽게 감염되는 한편, 개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범행내용이 다소 무겁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년에 대하여는 그를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법사랑위원의 선도보호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1978. 4. 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1981. 1. 1.부터는 전국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2007. 12. 21. 「소년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조건부 기소유예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법사랑위원의 선도 이외에 청소년꿈키움센터 등과 같은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의 상담·교육·활동 등도 포함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3, 2008. 6. 22. 시행).²³⁾

그러나 실제 기소유예 대상자 가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받는 비율이 10%에도 이르지 않아²⁴⁾ 대상자 대부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사회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대상자의 비행예방과 및 재비행방지를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근 학교폭력 등 저 연령 소년에 의한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조정과 함께 폐지했던 부산·광주·대전·청주·안산·창원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2012년 2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에는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2013년에는 순천, 전주, 춘천지역에 3개, 2014년에는 부산동부, 울산, 수원지역에 3개, 연차적으로 추가 신설하였고,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외 명칭 : 청소년꿈키움센터)²⁵⁾가 미설치된 제주지역에 2016년에 1개(제주소년원 부설 비직제 기구로 운영)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2-3>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및 대외 명칭

기관명(대외명칭)	주요임무	비고(대내명칭)
-----------	------	----------

2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24) 이승현 등 4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AA-02. 2014. 256.

25)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205호, 2019. 2.27.)

부산솔로몬 로파크	- 법체험 및 법연수기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 - 상담조사 - 청소년심리상담 - 보호자교육 - 법교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개발 및 직원 연수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 - 상담조사 등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로파크(2007년)	- 법체험 및 법연수기관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205호, 2019. 2.2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과정은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법체험, 청소년 대안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보호자 교육, 청소년 비행진단, 청소년 심리상담·가족상담, 교원 등 직무연수로 7개 대분류로 구분되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표 2-4>과 같다.

<표 2-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과정

대분류	교육과정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법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 등 출강)
	법교육(학교 등 출강)
	법체험(센터교육장)
	진로체험(학교출강·센터교육장)
청소년 대안교육 ※ (의뢰기관)	(학교) 특별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 선도처분 특별교육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법원) 대안교육명령 교육
	(유관기관) 보호관찰소, 6호 시설, 자립생활관 등 청소년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가족캠프, 사제캠프, 법캠프, 진로캠프, 학교폭력예방캠프 등
보호자 교육 ※ (의뢰기관)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특별교육
	(법원) 보호자특별교육명령 교육
	(자원) · 선도처분 학생 보호자 교육 ·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보호자 교육 · 대안교육·상담조사 보호자 교육 등
청소년 비행진단 ※ (의뢰기관)	(법원) 상담조사
청소년 심리상담·가족상담	청소년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교원 등 직무연수	교원, 청소년지도자 등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 출처 : 20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계획(법무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비행유형별 심화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가해학생의 변화 유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²⁶⁾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선도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대상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교육대상에 맞게 특화되어 있으나 비행유형별 프로그램 마다 사전검사, 사후검사, 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 제도가 없고, 가해행동의 동기나 가해유형에 따른 심화 교육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²⁷⁾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직제로 되어 있다. 센터의 선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소년비행예방팀’을 소년비행예방을 총괄하는 과로 신설하고, 향후 센터를 독립 직제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바. 소년원 학교

26) 이승현 등 4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AA-02. 2014, 256.

27) 반기리, 여자소년원 아이들의 일상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7.

사람들은 소년원을 “나이 어린 범죄자들이 가는 교도소”로 생각한다. 물론 소년원도 교도소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한 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표 2-5>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²⁸⁾

구분	소년원	소년교도소
적용 법률	○ 소년법 ○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처분청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처분 종류	○ 보호처분 - 벌금 이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형사처분 - 형벌 법령 위반자
시설	○ 10개(2개 여자 소년원) ○ 국가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잘못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하는 복지 성격의 특수교육·보호시설	○ 1개(김천) ○ 자유형을 집행하며 교정처우를 하는 행형 시설 ○ 여자소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구분	소년원	소년교도소
수용 대상	○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 범죄소년
수용 기간	○ 교육훈련기관 - 선고에 의한 수용기간 없음 -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	○ 선고에 의한 자유형 ○ 집행기간
사회 복귀	○ 퇴원 : 교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 ○ 임시퇴원 : 교정성적 양호하고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석방 : 형기 종료시 ○ 가석방 : 행형성적이 양호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
신분 제한	○ 전과기록 없음 ※ 장래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소년법 제32조 제6항)	○ 전과기록 남음 ※ 법에서 정한 복권 기한이 지나야 허용

소년교도소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기관인데 반해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28)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소년보호위원 기본교육과정 직무연수 자료집, 2013. 17.

소속된 ‘특수교육’기관으로 과거에 저지른 범죄보다는 앞으로 이들이 다시 또 저지르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를 요약하면 <표 2-5>과 같다. 29)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처우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인격 도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교도소와는 법적·이념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30)

<표 2-6>와 같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31)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표 2-6>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32)

처분	소년보호처분 내용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감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6개월, 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초과 못함)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초과 못함)

소년원은 과거에 수용과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처벌의 기능에 대하여 뒤르켐(Durkheim)은 공동체 내에서의 규범적 합의를 강화시킨다고 보았으며, 메닝거

29) 임수미, 2014. 소년원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30) 법무부,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8

31) 소년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우범소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2) 소년법 제 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제 33조(보호처분의 기간)

(Menninger)는 범죄자들의 악의 측면에 대한 처벌과정이 일반시민들의 억제력을 길러주고 사회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주의 사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이라는 교육적 내용과 복지사상을 기초로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소년원이 시설수용만으로는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과학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교육 및 복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소년원법(1988.12.31, 법률 제4058호)을 개정하여 소년원을 학교체제로 전환하였고(임수미, 2014), 대외적 공식명칭을 ‘학교’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³³⁾

본 연구에서 소년원 학교(이하 ‘소년원’)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205호, 2019. 2.27.)에 명시된 전국 10개 소년원 학교로 정의한다.

<표 2-7> 전국 소년원 학교 현황 및 대외 명칭³⁴⁾

소년원 명칭	소년원 대외 명칭 (학교 명칭)	비 고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계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원자 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으로 3단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 입원자 교육내용은 생활안내,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성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 체육활동, 분류조사 등이고, 2단계 기본교육은 특성화 교육, 생활지도, 교과교육, 직업훈련, 특별활동, 인성교육 등이다. 3단계 사회복귀 교육은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경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필수),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출원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입원자 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집단상담, 집단지도 과목 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강·절도예방교육 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중 1개 운영이 필수이다. ³⁵⁾ 따라서 모든

33) 임수미, 소년원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8.

34)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205호, 2019. 2.27.)

기관에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등 규율 위반 사안 발생 시 처우심사위원회³⁶⁾를 개최하여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 사과,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할 수 있다.³⁷⁾ 사안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기도 하는데 선도(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실시한다.³⁸⁾ 소년원에서는 법원에서 명령한 보호자특별교육 이외에 자원 참가자 보호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의무 참가자의 경우 교육만족도 평가(리커트 5척도)를 실시하고 있다.

Ⅲ.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선도 방안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과거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 또한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가족 등에게도 상처를 준다.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사안에 따라 형사상의 처분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또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선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선도 방안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의 개입을 하여야 한다. 가정, 학교, 경찰, 소년원, 사회복지기관 등이 협업하여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해당 아동 발견 시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개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거하고 폭력으로 향하는 의지와 정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부모의 아동학대 및 학교

35) 법무부, 2019 소년보호 교육기관 교육계획, 2019, 21.

36)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처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37)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징계)

38) 보호소년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규율위반 행위), 제15조(징계)

폭력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피해 아동의 가정(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인 점을 고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부모에게 올바른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을 알려주고,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이 의무화된 것처럼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³⁹⁾

셋째, 학교, Wee센터, 경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 등 지역사회 선도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중 ‘사회봉사’는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회봉사기관을 단위학교에서 일일이 찾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해당기관에서 가해학생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사회봉사제도 등을 비롯하여 선도조치를 유관기관과 원활하게 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Wee 센터는 특별교육을 가능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고,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선도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법 단계의 대상에게 경찰은 선도프로그램,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비행 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소년원 학교의 선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각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효과성을 분석을 하고, 선도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은 CYS-NET⁴⁰⁾, 소년비행예방 협의회⁴¹⁾ 등을 활용, 선도 기능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의 선도 강화를 위한 훈방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독립직제 추진 등의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 제시한 것들이 모두 바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지라도, 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선도 정책, 제도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죄화 되고 낙인화 되어 사회복귀나 건강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부모, 학교 교사, Wee 센터 교사, 경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직원, 소년원 학교 교직원 등이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단기적인 개입과 효과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래 업무를 충실히 하고 효과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가해 아동·청소년을 선도하여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실천적 개입과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9) 이명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2권 제1호, 2017. 115

4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41)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85호, 2018. 6. 11.)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경찰백서, 2017.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9.
법무부, 2019 소년보호 교육기관 교육계획, 2019.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소년보호위원 기본교육과정 직무연수 자료집, 201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2018.
소년법(법률 제15757호, 2018. 9.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54호, 2018. 9.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7479호, 2016. 9. 5.)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205호, 2019. 2.2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 201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4호, 2017. 11. 28.)

2. 논문

- 김경호,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 청소년상담연구 Vol. 14. No.
곽형곤(201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병무(2019),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박진희(201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박진희(201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반기리(2014), “여자소년원 아이들의 일상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은철(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 1999, 24-34.
도기봉(2009),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사회복지학회 22.
이명순(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2권 제 1호.
이승현 등 4명(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총서 14-AA-02.

- 임수미(2014), “소년원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혜정(2013), “남자청소년의 공격성과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반응 특성 연구 : 소년원과 일반 남학생들 중심으로”. (2).
- 정재준·원혜옥(2003),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 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원석(2018),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실태 및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3권 제2호.
- 이동임(2017), “피학대 경험이 있는 범죄자를 위한 치유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3권 제1호.
- 이유진, 경찰 선도프로그램 무용지물, 경인일보, 2018. 2. 27, 23.
- 한세리(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Leading pla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Pung-hoi Cha*

Recently school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have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in our society.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abuse behavior and abuse victim experience showed that abuse victim experienc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been subjected to school violence. Therefore, it is timely for us to study the leading method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 of abuse in order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n our society.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abuse damage, the following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First, children should be able to detect child abuse early and take appropriate protective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experiencing abuse. Second, parent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children can be taught correctly. Third, the functions of community leaders such as schools, Wee centers, polic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and juvenile reformer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aspect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police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school violence children and youths who experienced abuse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the social welfare field.

Keywords : Child abuse, experience of abuse, school violence, children, youth, Lead Plan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아동·청소년의 선도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 재 영*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이슈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가해 아동 및 청소년’, 그중에서도 ‘학대피해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선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내외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폭력피해와 폭력가해 행동의 중첩성이 보고된다는 결과에 주목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개입이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자의 제언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경찰은 소년범 선도를 위해, 1) 사랑의교실 (청소년 전문단체 위탁 상담·교육 프로그램), 2) 자체 선도프로그램 (경찰체험 및 전문가 초청 선도프로그램), 3) 표준 선도프로그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위탁 선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의 자체 선도프로그램은 범죄예방교육·치안시스템 견학 등 경찰관서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봉사·문화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선도프로그램은 자기통제·의사소통기술·문제해결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실시는 다이버전(Diversion)의 일종으로 경미 소년범을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키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 위탁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소년범죄의 특성상 엄벌주의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요구 및 활용은 경찰훈방권의 법적 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선도 프로그램(경찰다이버전)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불명확한 ‘경찰훈방권’의 법적 근거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지만, 실제로 경찰 실무상 운영되어 온 선도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개별화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프로그램의 개별화는 참여자의 개별욕구를 파악하고 있는지, 참여 전 재범횟수와 고위험군 등 대

*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상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지, 비행원인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경험을 가진 폭력가해 청소년의 경우, 폭보다 세밀한 관찰과 진단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도프로그램의 체계화이다. 현재 경찰에서 실시되고 선도프로그램의 상당 수가 일회성에 그치며 단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1회성 프로그램의 실시만으로는 선도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운영메뉴얼과 회차별 체계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이나, 심리적, 환경적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성과 체계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도프로그램 운영실무자와 선도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의 강화이다. 선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다수가 1년 내지 2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청소년 선도 업무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선도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선도심사위원의 주 역할은 선도조건부 훈방 또는 즉결심판이나 입건 여부의 결정이다. 그러나 선도심사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훈방 또는 입건여부에 대한판단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범죄 및 비행 유형과 위험성, 연령, 정신과적 문제, 선도프로그램의 적용 취지 등은 물론 가해 청소년의 학대피해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효과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 역량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의 영역은 교육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가정문제 상담 지원등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만이 그 역할을 해서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궁극적인 지향적은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이하 YOT)는 다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1998년 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조직된 것으로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경찰관, 보건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은 경고처분 대상소년을 YOT에 위탁하여야 하고, YOT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개입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경찰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청소년에게 적용시켜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도 ‘심사’의 기능을 전문가의 참여하에 더욱 강화시키고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은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처우에 활용되고 있어, 본격적인 형사사법절차에 진입한 청소년의 재범예방 및 선도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